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- 113호

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
폐지고시(안) 행정예고

2025. 3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- 113호

「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66호, 2019. 7. 29.)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5년 3월 26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행정예고

1. 폐지 이유

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「화장품법」이 개정(법률 제20767호, 2025. 1. 31. 공포)됨에 따라 「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66호, 2019. 7. 29.)을 폐지하고자 함

2. 의견 제출

「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」 폐지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참조 : 화장품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2815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
- 전자우편 : sunmilee@korea.kr
- 전화: 043-719-3409, 팩스 : 043-719-3400

3. 참고사항

이 폐지안은 「화장품법」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20767호, 2025. 1. 31. 개정, 2025. 8. 1. 시행)의 개정·공포에 따름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호

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

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9-66호)을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폐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에 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